

# 2025 현장체험학습 길라잡이



## 일 러 두 기

이 길라잡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들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안내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안내자료」(2024.12.)를 바탕으로,  
초·중등학교 관리자, 교사, 행정실장, 교원노조와 단체, 현장학습컨설팅  
위원 등으로 구성된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TF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본 자료를 참고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 법령 제·개정 등으로 중요한 추가·변경 사항 발생 시 공문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직업체험, 특성화고 체험 및 국제교류 등 교육청 내  
유관부서 업무로 추진되는 행사의 경우 해당 부서의 지침에 따릅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과 교육청 담당 부서의 최신 안내사항 등을  
확인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길라잡이는 2025학년도 3월 19일 이후 시행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적용됩니다.  
※ 다만, **인솔자 및 안전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 6월 21일 이후 의무 적용됩니다.
  - 본 길라잡이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용어의 정의

### 길라잡이를 적용해야 하는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일형 현장체험활동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사전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인솔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란? (이하 “활성화위원회”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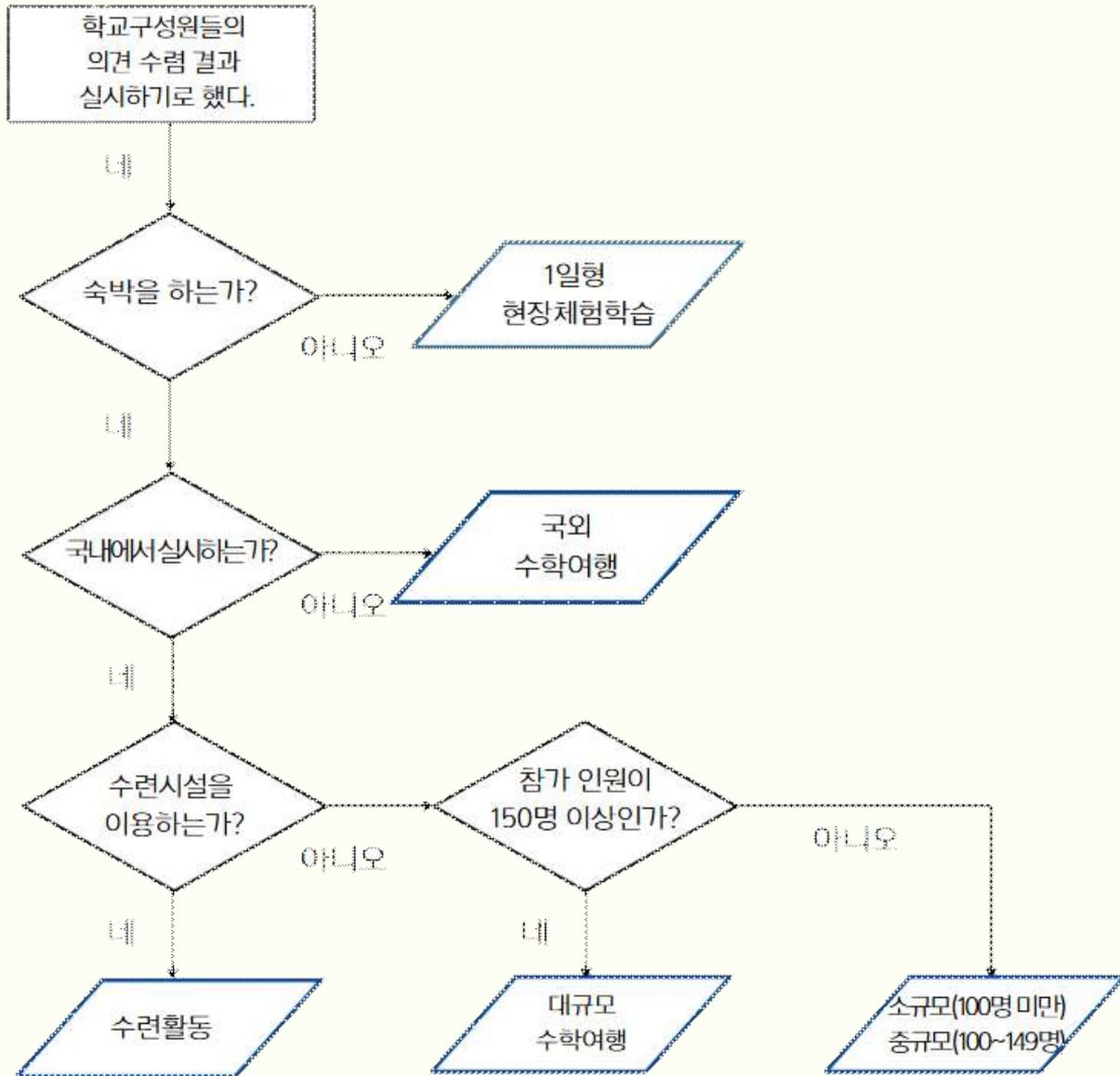
학교운영위원회에 현장체험학습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전문적·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말한다.

※ 다만, 150명 미만으로 추진 시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 “안전요원”이란?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참여자의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뜻한다.

## ☑ 현장체험학습 유형 찾기



## ☑ 현장체험학습 유형별 한눈에 보기

| 구분 | 유형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                 |                |                                   |  | 1일형<br>현장체험<br>학습                               |   |
|----|---------------------------------|--|-----------------|----------------|-----------------------------------|--|---|---|
|    |                                 | 수학여행   |                 |                |                                   | 수련활동   |   |   |
|    |                                 | 소규모<br>100명 미만   | 중규모<br>100~149명 | 대규모<br>150명 이상 | 국외<br>규모 무관                       |  |   |   |
| 1  | 기본 계획 수립<br>(학교교육과정<br>반영, 12p) | ○  | ○               | ○              | ○                                 | ○  | ○   |   |
| 2  | 학생 선호도<br>조사(12p)               | ○  | ○               | ○              | ○                                 | ○  | 자율  |   |
| 3  | 학부모<br>동의(12p)                  | 여부   | ○               | ○              | ○                                 | ○  | ○   | ○ |
|    |                                 | 비율   | 70% 이상          |                | 80% 이상                            | 70% 이상   | 자율  |   |
| 4  | 인솔자<br>(인솔교사 + 보조인력)<br>(3p)    | 학급당(또는 차량당) 2명 권장<br>단, 인솔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br>학급당 1명 인솔 가능(학급당 1명 인솔 시 인솔자는 교사만 가능) |                 |                |                                   |  |   |   |
| 5  | 안전요원 배치<br>(3~7p)               | 50명당 1명 의무   |                 |                | 50명당 1명 의무<br>(수련시설<br>지도자 포함)    | 체험학습<br>상황에<br>따라 학교<br>자율 운영  |   |   |
| 6  | 사전 안전교육<br>(13p, 21~24p)        | ○  | ○               | ○              | ○                                 | ○  | ○   |   |
| 7  | 미참가 학생<br>지도 계획(12p, 21p)       | ○  | ○               | ○              | ○                                 | ○  | ○   |   |
| 8  | 컨설팅 실시(13p)                     | 요청시  | 요청시             | ○              | ○                                 | -  | -   |   |
| 9  | 활성화위원회<br>구성·운영(14p)            | 자율   | 자율              | ○              | ○                                 | 수학여행<br>기준과 동일   | -   |   |
| 10 | 사전답사<br>(15p, 30p)              | 1회 이상  |                 |                | 1회 이상<br>단, 특별한<br>경우 서류<br>대체 가능 | 1회 이상<br>단, 국·공립<br>수련시설 및<br>도교육청 소속기관<br>이용 시 안전대책이<br>확보된 경우<br>학교장 책임하에<br>생략 가능 | 1회<br>단, 안전대책<br>확보된<br>경우 학교장<br>책임하에<br>생략 가능 |   |
| 11 | 학교운영위원회<br>심의(16p)              | ○  | ○               | ○              | ○                                 | ○  | ○   |   |
| 12 | 실시 결과<br>공개(답재)<br>(2p, 27p)    | ○  | ○               | ○              | ○                                 | ○  | -   |   |

## ☑ 유형별 현장체험학습 한눈에 보기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28쪽

| 단계 | 추진 내용   | 본문<br>(쪽)      | 서식<br>(쪽)    |
|----|---|----------------|--------------|
|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계획 수립(학교교육과정 반영)</li> <li>• 학부모 동의(70% 이상) 및 학생 선호도 조사</li> <li>• 컨설팅은 학교에서 요청시 실시</li> </ul>   | 13~14          | 1~8<br>17~31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외 6~10명 구성</li> <li>- 수학여행 상세 계획 수립, 사전답사 지원 및 제안서 평가</li> </ul> </li> </ul>   | 14             | 9~13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답사(계약 전 필요시)(안전점검 및 체크리스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여행 코스 및 프로그램 일정 점검, 숙박 및 체험 시설 등 답사</li> <li>- 숙소 및 체험시설 안전 상태 확인 및 점검</li> </ul> </li> </ul>         | 15             | 32~36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일정, 장소, 인솔자 현황, 경비, 안전 계획, 정산 계획 등)</li> <li>-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장 결재</li> </ul> </li> </ul>          | 16             | 15           |
| 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관련 최신 법령 및 재무과 계약 관련 지침 확인 후 추진</li> <li>• 계획에 따라 계약 체결(계약 필수사항 확인 등)</li> </ul>   | 17~20<br>32~42 | 45~83        |
|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답사 실시(안전점검 및 체크리스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여행 또는 수련활동 코스 및 프로그램 일정 점검, 숙박 및 체험시설 등 답사</li> <li>- 숙소 및 체험시설 안전상태 확인 및 점검</li> </ul> </li> </ul>          | 15             | 32~36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여행 또는 수련활동 사전 준비(안전교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활동과 관련된 교육자료·현장 정보 등 사전 교육</li> <li>- 교통수단별, 숙소 등 체험시설, 성범죄(폭력) 예방, 기타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li> </ul> </li> </ul> | 21~23          | 17~31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여행 또는 수련활동 운영 및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시</li> <li>-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 적합한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li> </ul> </li> </ul>                | 24             | 17~31        |
| 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수학여행 경비 집행</li> <li>• 수학여행 또는 수련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및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 추진 내역 공개</li> </ul>  | 25~27          | 84           |
|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여행 또는 수련활동 평가 및 결과 활용</li> <li>• 수학여행 또는 수련활동 평가 결과 공개</li> </ul>  | 27             | 85~88        |

## 1일형 현장체험학습 → 30쪽

| 단계 | 추진 내용  | 본문<br>(쪽)      | 서식<br>(쪽)    |
|----|--|----------------|--------------|
|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계획 수립(학교교육과정 반영)</li> <li>• 학부모 동의(70% 이상) 및 학생 선호도 조사</li> <li>• 컨설팅은 학교에서 요청시 실시</li> </ul>  | 12~13          | 1~8<br>17~31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일정, 장소, 인솔자 현황, 경비, 안전 계획, 정산 계획 등)</li> <li>-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장 결재</li> </ul> </li> </ul>     | 14             | 15           |
| 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관련 최신 법령 및 재무과 계약 관련 지침 확인 후 추진</li> <li>• 1일형 계획에 따라 계약 체결(계약 필수사항 확인 등)</li> </ul>  | 17~20<br>32~42 | 45~83        |
|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답사 실시(안전점검 및 체크리스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형 현장체험학습 코스 및 프로그램 일정 점검, 체험시설 등 답사</li> <li>- 체험시설 안전상태 확인 및 점검</li> </ul> </li> </ul>                 | 15             | 32~36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체험학습 사전 준비(안전교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체험학습 관련된 교육자료·현장 정보 등 사전 교육</li> <li>- 교통수단별, 숙소 등 체험시설, 성범죄(폭력) 예방, 기타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li> </ul> </li> </ul> | 21~23          | 17~31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시</li> <li>-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 적합한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li> </ul> </li> </ul>                 | 24             | 17~31        |
| 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현장체험학습 경비 집행</li> <li>•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및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 추진 내역 공개</li> </ul>   | 25~27          | 84           |
|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체험학습 평가 및 결과 활용</li> <li>• 현장체험학습 평가 결과 공개</li> </ul>   | 27             | 85~88        |

## 국외 수학여행 → 30쪽

| 단계 | 추진 내용   | 본문<br>(쪽)      | 서식<br>(쪽)    |
|----|---|----------------|--------------|
|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계획 수립(학교교육과정 반영)</li> <li>• 학부모 동의(80% 이상) 및 학생 선호도 조사</li> <li>• 컨설팅은 학교에서 요청시 실시</li> </ul>   | 12~13          | 1~8<br>17~31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외 6~10명 구성</li> <li>- 국외 수학여행 상세 계획 수립 및 사전답사 지원</li> </ul> </li> </ul>  | 14             | 9~13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국외여행 절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첨부 승인 허가 신청</li> <li>- (사후) 보고서 제출 및 탑재</li> </ul> </li> </ul>   | 30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일정, 장소, 인솔자 현황, 경비, 안전 계획, 정산 계획 등)</li> <li>-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장 결재</li> </ul> </li> </ul>      | 16             | 15           |
| 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관련 최신 법령 및 재무과 계약 관련 지침 확인 후 추진</li> <li>• 수학여행 계획에 따라 계약 체결(계약 필수사항 확인 등)</li> </ul>  | 17~20<br>32~42 | 45~83        |
|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답사 실시(안전점검 및 체크리스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수학여행 코스 및 프로그램 일정 점검, 숙박 및 체험시설 등 답사</li> <li>- 숙소 및 체험시설 안전상태 확인 및 점검</li> </ul> </li> </ul>           | 15             | 32~36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수학여행 사전 준비(안전교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수학여행 관련된 교육자료현장 정보 등 사전 교육</li> <li>- 교통수단별, 숙소 등 체험시설, 성범죄(폭력) 예방, 기타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li> </ul> </li> </ul> | 21~23          | 17~31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수학여행 운영 및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시</li> <li>-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 적합한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li> </ul> </li> </ul>                 | 24             | 17~31        |
| 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국외 수학여행 경비 집행</li> <li>• 수학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및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 추진 내역 공개</li> </ul>   | 25~27          | 84           |
|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수학여행 평가 및 결과 활용</li> <li>• 국외 수학여행 평가 결과 공개</li> </ul>  | 27             | 85~88        |

## ☑ 주요 개정 내용

| 내용                       | 2024년  | 2025년   |
|--------------------------|--|---|
| [길라잡이]<br>전체 및<br>55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어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마식 현장체험학습</li> <li>- 현장답사</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어변경(교육부 안내자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여행</li> <li>- 사전답사</li> </ul> </li> <li>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참고할 주요 사이트 및 연락처 안내</li> </ul>                     |
| [길라잡이]<br>1쪽 및 51~52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과 계약 법령 제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 주체별 안전 관련 법령 추가 및 QR코드 안내</li> </ul>  |
| [길라잡이]<br>2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체험학습 운영의 기본방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체험학습 운영의 기본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 합의에 따라 자율적 운영</li> </ul> </li> </ul>                             |
| [길라잡이]<br>3~7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요원 배치 권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솔자 및 안전요원 운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솔자 유형별 자격</li> <li>- 안전요원 등 인솔자 배치 확대</li> </ul> </li> <li>※ 근거: 「학교안전법」 개정 시행 및 관련 조례 개정 예정</li> </ul> |
| [길라잡이]<br>14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성화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외 5~10명</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성화위원회 구성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외 6~10명</li> </ul> </li> <li>※ 사유: 계약관련 입찰 진행 시 제안서 평가 실시 (최소 7명)</li> </ul>                             |
| [길라잡이]<br>15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련활동 사전답사 1회이상 필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국·공립 수련시설 이용 시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 가능</li> </ul> </li> </ul>                                      |
| [길라잡이]<br>20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행자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활동 및 국외 수학여행</li> <li>- 실비전액보상 권장</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행자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특약 내용 확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활동 및 숙박형 현장체험활동</li> <li>- 실비전액보상 권장 및 구조송환비용특약 내용 확인</li> </ul> </li> </ul>               |
| [길라잡이]<br>37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버스 계약 시 다양한 서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버스 구비서류 간소화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안전정보조회통보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li> </ul> </li> </ul>                                   |
| [길라잡이]<br>8쪽 및<br>53~54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부패 청렴계획</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렴 안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시 청렴 위반 사례 Q&amp;A 및 신고 절차 추가</li> </ul> </li> </ul>  |
| 안전점검<br>체크리스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계약 서식 안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 안내자료 서식 활용 변경 구성</li> </ul>  |
| 서식<br>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체험학습 서식 안내</li> <li>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예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예시)에 필수조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 진행 관련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li> <li>- 차량 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 관련</li> </ul> </li> </ul>           |

## ☑ 차 례

우리 학교가 가려는  
현장체험학습은 어떤  
유형인가요?

- ◎ 용어의 정의
- ◎ 운영 흐름도

현장체험학습 가려면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 ◎ 현장체험학습 한눈에 살펴보기
- ◎ 유형별 현장체험학습 한눈에 보기
- ◎ 주요 개정 내용

### I.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개요

|                           |    |
|---------------------------|----|
| 1. 목적 .....               | 1  |
| 2. 관련법령 .....             | 1  |
| 3. 기본 운영 방향 .....         | 2  |
| 4. 현장체험학습 정의와 유형 .....    | 3  |
| 5. 인솔자 및 안전요원 운영 .....    | 3  |
| 6.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사항 ..... | 8  |
| 7. 사안 발생 시 대응 요령 .....    | 9  |
| 8. 방역 관리 안내 .....         | 10 |

### II. 운영 실무

|                          |    |
|--------------------------|----|
| 1. 현장체험학습 업무 흐름도 .....   | 11 |
| 2.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 .....    | 12 |
| 가. 계획하기 .....            | 12 |
| 나. 계약하기 .....            | 17 |
| 다. 운영하기 .....            | 21 |
| 라. 경비 집행 및 정산 .....      | 25 |
| 마. 평가 및 사후 처리 .....      | 27 |
| 3. 유형별 활동 추진 시 주안점 ..... | 28 |
| 가. 수학여행 .....            | 28 |
| 나. 수련활동 .....            | 28 |
| 다. 1일형 현장체험활동 .....      | 30 |
| 라. 국외 수학여행 .....         | 30 |

|       |  |    |
|-------|--|----|
| Ⅲ.    | 1. 계약 방법별 진행 절차 .....                          | 32 |
| 계약 실무 | 2. 계약 시 구비서류 .....                             | 37 |
|       | 3. 계약 시 유의사항 .....                             | 40 |
|       | 4.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 .....                        | 41 |
| Ⅳ.    | 1. 관련 법규 .....                                 | 43 |
| 기타    |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 조례                     | 43 |
|       | 나. 전북특별자치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                 | 46 |
|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48 |
|       | 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br>지원에 관한 조례 ..... | 50 |
|       | 마. 기타 관련 규정 .....                              | 51 |
|       | 2.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청렴 위반 사례 Q&A .....              | 53 |
|       | 3. 참고 사이트 및 연락처 .....                          | 55 |

# I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개요

## 1. 목적

- 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각급 학교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 나.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사회정서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전북교육의 7가지 미래역량과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가치와 덕목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 2. 관련 법령

### 가. 교육·활동 관련 법령

-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 3)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4)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안전 관련 법령

-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5항
-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 4) 전북특별자치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 다. 계약 및 청렴 관련 법령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2)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3)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3. 기본 운영 방향

#### 가. (기본 원칙)

- 1)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 법규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에 부합하게 실시한다.
- 2)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3)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활동으로 운영한다.
- 4)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교육기회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로 운영되어야 한다.
- 5)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에 앞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체험학습 계획의 안전 관련 지침을 따른다.
- 6)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관련 학생의 연령, 활동 및 지역의 특성, 이동거리 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 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활성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 8)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시기, 장소,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공개방(도교육청 누리집-정보공개-현장체험학습)을 통해 공개한다.  
※ 공개 방법: 숙박형 실시 후 14일 이내, 교직원 로그인 후, 수학여행 또는 수련활동 탭에 등록  
※ 필수공개사항: 계획, 학부모동의율 및 심의결과, 계약결과, 실시결과
- 9) 현장체험학습은 투명한 계약절차를 통해 청렴교육을 실천한다.

#### 【 현장체험학습 운영 공통 준수사항 】

-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 숙박시설에 대한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  
※ 단,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이용 시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 필요
- 위탁운영 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의 ‘인증’ 프로그램 이용
- 사전답사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인솔자의 현장 입장지도
- 학생·인솔자 보험가입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국외 수학여행(실비전액 보상 조건 가입 권장, 구조송환비용특약 확인) 및 고위험 현장체험활동을 제외한 모든 현장체험활동의 여행자보험 가입은 학교별 가입 여부 자율적 결정
-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 4. 현장체험학습의 정의와 유형

가. (정의) 현장체험학습은 학교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일환으로 학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 다만,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직업체험, 특성화고 체험 및 국제교류 등 교육청 내 유관부서 업무로 추진되는 행사의 경우 해당 부서의 지침에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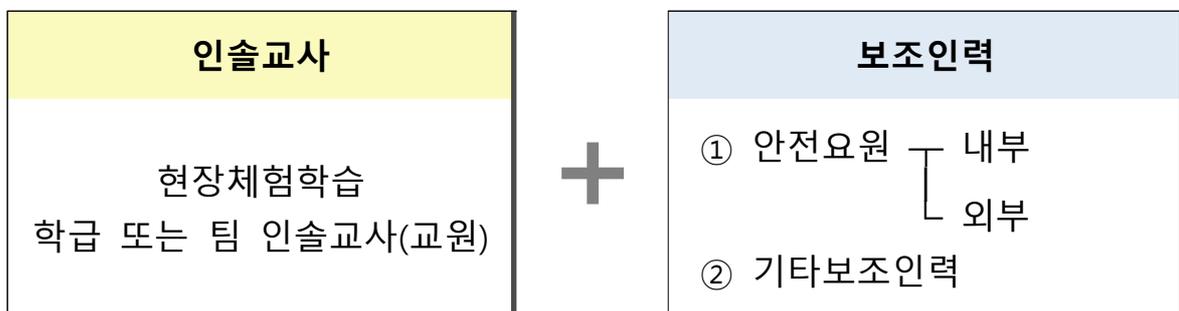
나. (유형) 숙박 유무, 실시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  | 1일형 현장체험학습   |
|--|--|--|
| <p><b>수학여행</b></p> <p>○ 다양한 사회, 자연, 문화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전문을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단체 숙박형 여행</p> | <p><b>수련활동</b></p> <p>○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협동심 함양을 위해 청소년 수련 시설로 인정 받은 장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활동</p> | <p>○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1일 동안 이루어지는 관람, 견학, 강의 등 비숙박 체험활동</p> <p>※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 여행·수련활동)을 비숙박으로 운영할 경우</p> |

#### [실시 규모에 따른 분류]

|                                  |                                     |                                  |
|----------------------------------|-------------------------------------|----------------------------------|
| <p><b>소규모</b></p> <p>100명 미만</p> | <p><b>중규모</b></p> <p>100 ~ 149명</p> | <p><b>대규모</b></p> <p>150명 이상</p> |
|----------------------------------|-------------------------------------|----------------------------------|

#### 5. 인솔자 및 안전요원 운영 ※ 2025학년도 6월 21일 이후 의무 적용



#### [현장체험학습 인솔자 유형]

가. 인솔자

- 1) (유형) 교직원(교원 안전요원 포함), 외부 인력(학부모, 자원봉사자, 외부 안전요원 등)을 포함
- 2) (인원수) 학급당 2명(학급 단위가 아닌 경우 학생 25명당 2명) 확보 권장
- 3) (자격) 안전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과 안전대책 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1인 배치 가능(인솔자가 1명일 경우 반드시 교원이 인솔자여야 함)

나. 인솔교사

- 1) (자격요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교원)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함
- 2) 안전요원(내부) 자격 연수를 이수한 경우 안전요원(내부)의 역할을 겸할 수 있으나, 가급적 별도 안전요원 등 보조인력을 확보하여 인솔교사 부담 완화 지원

다. 안전요원

- 1) (정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참여자의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뜻함
- 2) (역할) 학생 인솔(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응급구조 등
- 3) (유형)
  - **내부 안전요원** 인솔교사를 제외한 교원으로 일정 부분의 교육을 받고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는 교원
  - **외부 안전요원** 안전 관련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안전요원 안전교육과정(14시간)을 이수한 자
    - \* (예시)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4) (배치기준)

| 유형                           | 안전요원 배치 기준  |
|------------------------------|---|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br>(수학여행·수련활동)    | 학생 50명당 1명(의무)<br>※ (예) 참가학생 50~99명: 1명, 100~149명: 2명 의무 배치 |
| 1일형 현장체험학습<br>(소풍·수학여행·수련활동) | 체험학습 상황에 맞춰<br>학교별 자율 운영(권장)                                |

※ 여행 업체와 계약시 안전요원 관련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규모에 맞는 안전 요원 배치 가능

라. 기타보조인력

- 1) (정의) 인솔교사 및 안전요원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안전요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인력
- 2) (역할) 인솔교사와 외부인력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협조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사전회의 및 사전교육 실시 권장
- 3) (대상) 초·중등 교육 및 안전관련 학과 (교·사범대 및 경찰, 소방, 간호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자, 자원봉사자, 교직원 등
- 4) 학부모 및 자원봉사자를 인솔자로 위촉할 경우 경비(보험료 포함)는 학교 운영비에 편성하여 집행

마. 인솔자별 자격 부여 교육과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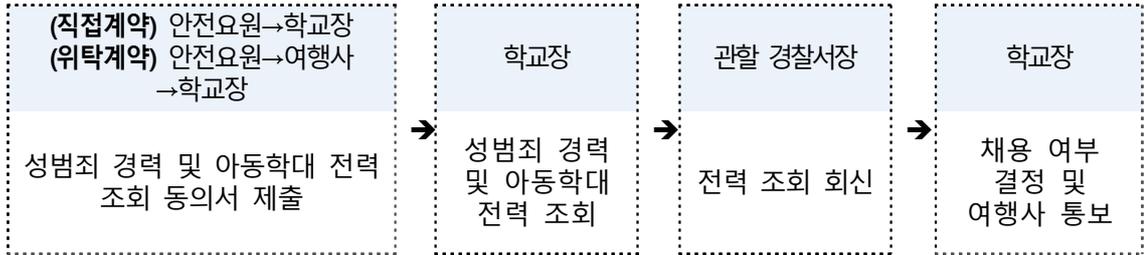
| 인솔자 유형       | 과정명   | 연수기관                                   | 이수 시간                                 | 유효 기간 | 비고  |
|--------------|---|--|---------------------------------------|-------|---|
| 인솔교사         | 학교안전교육 직무연수<br>(법정 의무연수)  | 각종 연수기관                                | 15시간                                  | 3년    | -   |
| 안전요원<br>(내부) | ① (이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br>길라잡이* 원격연수<br>+ (실습) 심폐소생술교육<br>(법정 의무연수)                        | (이론) 중앙교육연수원<br>전북교육연수포털<br>(실습) 소속 학교 | (이론) 10시간<br>+<br>(실습) 3시간<br>= 총13시간 | 2년    | ※ 매년 (실습)심폐<br>소생술 이수 시<br>1년 자격 연장<br><br>※ 1년 휴직, 1년<br>심폐소생술<br>미이수의 경우<br>자격유지 가능 |
|              | ※①과 ② 중<br>선택 이수<br>② 여름방학중<br>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직무연수                                       |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 15시간                                  | 2년    |   |
| 안전요원<br>(외부)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 대한적십자사                                 | 14시간<br>이상                            | 2년    | 재교육(7시간)<br>이수 시<br>2년 연장   |
| 기타보조<br>인력   |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자율 운영<br>※ (예시) 현장체험학습 사전교육(1시간),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이수증(2시간) 등 학교별 상황에 맞게 자율 운영 |  |                                       |       |   |

\* '2025. 교원 의무연수 I' 과정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길라잡이' 포함(개설 2025.4.1. 예정)

## 바. 인솔자 배치 및 운영

- 1) (인솔자) 학생 안전을 위하여 적정 인솔자 확보 운영
  - 학급당(또는 차량별) 인솔자 2명 권장
  - 안전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과 안전대책 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1인 배치 가능(단, 인솔자가 1명일 경우 반드시 교원으로 인솔자를 배치해야 함)
- 2) (안전요원) 학생연령, 이동거리, 활동유형, 장소특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 학생 5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 배치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 참가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의무 배치(단, 수련 활동의 경우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지도자는 안전요원 대신 가능)
  -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체험학습 상황에 따라 학교 자율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이동과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애 정도와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보조 인력 배치 권장
- 3) 학교는 필요한 경우 사전답사 등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 배치 운영 가능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24.12.20. 신설, '25.6.21. 시행)
- 4) 학교는 기준에 맞는 안전요원(내부, 외부)을 배치하도록 노력하되,
  - 안전요원(내부, 외부)만으로 배치 최소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기타보조인력 배치 가능
  - 이 경우, 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
    - \* (예시) 기타보조인력이 안전요원을 대체할 경우, 안전요원 인원의 1.5배~2배 확보
- 5)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여행업체와의 계약 시 보조인력 관련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배치 요구 가능
  - ※ 안전요원 인력풀: 크레존([www.crezone.net](http://www.crezone.net)) - 창의적 체험활동 - 현장체험학습 - 안전요원 구인·구직 활용 가능(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 6) 안전요원(외부), 기타보조인력의 근무시간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장 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할 부여하여 입찰 공고문, 과업내용서, 계약서 등에 명확히 명시
- 7) 안전요원(외부)의 경우, 교육이수증은 제출받고, 신분증을 현장 확인하여 제출 서류상의 안전요원(외부)과 상이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도록 유의

8)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외부), 기타보조인력은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 관련 외부 보조인력을 여행업체에서 채용하더라도 해당 인력은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경력·전력 조회를 하여야 함

9) 안전요원(외부) 및 기타보조인력 배치로 발생하는 경비는 학교회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등으로 편성 가능

## 6.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사항

- 가. 직원연수 시 현장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를 안내하여 교직원이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청렴교육 실시
- 나.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관련 업체(위탁여행업체, 숙박업체, 수련업체, 운송업체 등)로부터 모든 형태의 금품(선물, 할인권 등), 향응(식사, 접대 등), 편의(교통, 숙박 등)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팸투어\* 금지)
  - \* 팸투어(Fam Tour): 지자체나 항공사 등이 관광 상품 마케팅, 특정관광단지 홍보를 위해 관련자, 유관인사 등을 초청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는 것
- 다. 위탁여행업체, 숙박업체, 수련업체, 운송업체 등 관련 업체와 계약 시 청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과정상의 투명성 및 청렴도 제고
  - ※ 부패경험이 청렴도 측정의 중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청렴 마인드 제고 및 청렴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
  - ※ 계약 시 청렴 위반사례 Q&A(53쪽) 및 현장체험학습 비리고발센터 운영 안내

### 【 현장체험학습 비리고발센터 운영 】

#### ■ 내용

-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계약업체 또는 위탁업체의 선정 및 계약 과정에서의 비리 신고
- 사전 준비 과정 및 운영 단계에서 업체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및 금품수수 등의 비리 신고

■ 대상: 관련 교직원(교장, 교감, 행정실장, 담당교사, 계약담당 교직원 등)

■ 신고 및 상담: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clean.go.kr)

- 라. 교직원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 거부 등 권한을 이용한 갑질 행위 금지
- 마. 인솔자 및 사전답사를 위한 모든 소요 비용은 학교 예산으로 지급
- 바. 인솔자 및 사전답사단의 무료입장은 학생안전 지도를 위한 인솔, 체험 현장 안전 점검, 시설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
- 사. 공무상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반드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여비 목적에 맞게 사용
  -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참고

## 7. 사안 발생 시 대응 요령

- 가.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한 휴대폰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학교에서 관리
- 나.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즉시 SNS(문자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연락
- 다. 사고(사안) 발생 시, 선제적 대응 후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학교안전과)에 유선 보고하고, 사안보고서(서식 89쪽) 제출  
※ 국립학교는 교육부 관련 부서에 동시 보고
- 라. 현장체험학습 사안발생 시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학생안전과,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처



### 【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육부로 보고해야 하는 사고 】

-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체험 관련 시설에 대한 침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체험 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체험현장에서 식중독 및 법정 전염병 발생 시
-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그 외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

## 8. 방역 관리 안내

### 가. 행사 예정 학년 감염병 확진자 급증시 대처 요령

| 기준   | 대처 요령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확진 비율이 3% 내외로 연속 3일 이상 발생시</li> <li>(예) 행사 예정 학년 정원이 100명인 경우 3명(3%)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연속 3일 이상 발생시 (3일 누적 18명 이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 판단하에 학부모 동의를 재조사 가능</li> <li>- 학부모 동의율 70% 이상시 행사 추진 가능</li> <li>- 동의율 70% 미만시 일정 변경(연기) 또는 부득이한 경우 행사 취소</li> </ul> |

### 나. 행사 중 감염병 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예시)

| 상황  | 대응 절차  | 비고                                     |
|---|--|--|
| 유증상자 발생   | ① 별도 숙소 격리후 감염병 검사 실시<br>①-1 (검사결과 음성) 해당 증상 치료 및 활동 가능<br>①-2 (검사결과 양성) 별도 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검사<br>②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검사결과 확인까지 별도 격리)<br>②-1 (검사결과 음성) 해당 증상 치료 및 활동 가능<br>②-2 (검사결과 양성) 확진자 발생시 대응절차 조치  | 감염병 위기단계 상황, 법정감염병 등 위기 상황 발생시 대응절차 적용 |
| 확진자 발생  | ① 별도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으로 이송 또는 별도 장소 격리<br>※ 사전에 작성된 학교 대비계획에 의거한 조치<br>② 확진자와 같은 방 학생 감염병 검사 실시<br>②-1 (같은방 모두 음성) 밀접접촉자 활동 가능<br>②-2 (같은방 내 양성발생시) 의료기관 검사, 보건당국 및 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 실시, 학급 전원 감염병 검사<br>③ 해당 학급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숙소에 격리<br>③-1 (학급내 추가확진자 미발생) 나머지 학생 활동 가능<br>③-2 (학급내 추가확진자 발생) 행사참여자 전원 검사 |  |
| 집단 발생<br>(최초 확진자와 같은방, 같은 학급을 통한 확산시)<br>※ 기준: 2개 학급 이상 발생 또는 행사인원의 3% 이상 확진시 | ① 학교장 판단하에 행사중단 후 복귀 가능<br>② 가정복귀후 행사참여자 전원 감염병 검사 실시<br>③ 귀가후 다음날 원격수업 실시<br>④ 검사결과 학교장 내부결재, 학생 확진자 발생추이 지속적 관찰 및 교육(지원)청 보고<br>※ 일주일간 지속적 보고후 발생 추이에 따라 보고 연장 여부 결정   |  |

※ 수련기관 또는 위탁여행업체와 계약시 '감염병 발생시 별도 격리 숙소 확보, 확진자 발생시 이동조치 등'에 대한 내용 사전 협의 및 포함

- 사전 계획수립단계부터 '확진자 발생시 ①인솔교사 동행 이동 ②학부모 동행 이동 ③업체 인원 동행 이동 ④인솔교사 동반 격리 등' 업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
- 확진자 대비계획 수립 및 학부모와의 충분한 소통 / 안내, 확진자 격리 및 이동과 관련한 충분한 예비비(기초금액편성시 반영, 행사후 수익자부담금 잔액발생시 환불) 확보

## II

## 운영 실무

### 1 현장체험학습 업무 흐름도

| 단계         | 추진 내용   |
|------------|---|
| 계획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li> <li>• 기본 계획 수립(학교교육과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5월, 10월 집중예 유의), 대상, 목적, 방법, 안전대책 등 명시</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외 6~10명 이하</li> <li>-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전 개최</li> <li>- 현장체험학습 상세 계획 수립, 사전답사 지원 및 제안서 평가</li> <li>- 대규모, 국외 수학여행은 필수 구성</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답사(계약 전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체험학습 코스 및 프로그램 일정 점검, 숙박 및 체험시설 등 답사</li> <li>- 숙소 및 체험시설 안전 상태 확인 및 점검</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일정, 장소, 인솔자 현황, 경비, 안전 계획, 정산 계획 등)</li> <li>-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장 결재</li> </ul> </li> </ul>  |
| 계약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관련 최신 법령 및 재무과 계약 관련 지침 확인 후 추진</li> <li>•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따라 계약 체결(계약 필수사항 확인 등)</li> </ul>  |
| 운영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답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체험학습 코스 및 프로그램 일정 점검, 숙박 및 체험시설 등 답사</li> <li>- 숙소 및 체험시설 안전상태 확인 및 점검</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체험학습 사전 준비(안전교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체험학습 관련된 교육자료·현장 정보 등 사전 교육</li> <li>- 교통수단별, 숙소 등 체험시설, 성범죄(폭력) 예방, 기타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시</li> <li>-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 적합한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li> </ul> </li> </ul>  |
| 경비 집행 및 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현장체험학습 경비 집행</li> <li>•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및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 추진 내역 공개</li> </ul>  |
| 평가 및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체험학습 평가 및 결과 활용</li> <li>• 현장체험학습 평가 결과 공개</li> </ul>  |

## 2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

### 가 계획하기

#### 기본계획 수립

1)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길라잡이를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한다.

- 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협의회 등 학교구성원(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 합의를 거쳐 결정
- 학교급별 학생 연령, 계절, 지역 특성,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립
- 5월과 10월에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가격, 서비스의 질 등에서 상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기 분산을 적극 고려

2) 학교교육계획서 학사일정에 현장체험학습 대상, 시기 등을 명시하고, 학교 교육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을 수립한다.

- 현장체험학습은 장소와 부담 금액 등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한 후,
  - 학부모의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으며, 강압적 참여 유도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학부모 동의율 70% 이상(국외는 80% 이상)을 얻어 실시하며, 도교육청 기준에 따른 학부모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실시
  -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학부모 동의서를 수합하나, 반영 비율은 학교 자율로 결정
    - ※ 수익자 부담이 아닌 교육과정 내의 현장체험활동 참석 여부 파악을 위한 신청서는 학년 초 종합신청서로 대체 가능

3)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체험학습 목적과 테마에 맞게 지역, 운송, 숙박, 식사, 프로그램, 학생별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단,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고려하여 무리한 일정 편성 및 운영은 지양한다.

- ※ 미참가학생 지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학습결손 방지(미참가학생 지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결석처리 하여서는 안됨)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장소, 시기, 체험활동 내용에 대해 학생 선호도 조사 실시 후 이를 반영한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는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 학생 안전을 고려한 수학여행 장소 선정
  - ※ 수학여행 장소, 시기, 교통수단 등은 학생학부모에게 명확히 안내하여 민원 소지 최소화
  - ※ 특히, 국외 수학여행 시 태풍, 지진, 전염병 등 학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 지역은 가급적 지양

4) 교육 장소 및 시설, 이동,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환자 발생 시 대책 등 포함

- **[대상별]** 학생·인솔자 대상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 사전 파악 및 관리 철저
- **[상황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 교육, 대체 프로그램 마련 및 비상 시 구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사전 정보 확인
- **[단계별]** 현장체험학습 실시 과정(사전, 실행, 사후)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및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안전교육 실시

5) 현장체험학습 관계자에 대한 청렴 교육을 기본 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교통, 숙박 등)를 제공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6) 현장체험학습의 경비\* 및 미참가 학생 환불에 필요한 금액 등은 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

\* 인솔 교원 경비, 여비, 답사 경비, 답사에 필요한 렌트비 등

7) 각 학교급별의 특성과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주제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다.

8)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심 서비스, 인센티브 제도 등)과 지역별 추천 프로그램 등 현장체험학습 관련 서비스 운영 기관을 적극 활용한다.

※ 소방안전본부의 숙박업소 사전 점검, 제주도·경주의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

9) 대규모(참가 학생 150명 이상) 및 국외 수학여행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지원단의 확인 및 컨설팅 후 실시한다.

\*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 → 도교육청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활성화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다만, 150명 미만으로 추진 시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 - 활성화위원회 구성 방법 안내 -

- 위원은 위원장 외 6~10명으로 구성하되,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학생·학부모 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상 확보 권장
- 위원 구성 및 임기,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은 학교 자율로 정함
-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및 업체 선정을 위하여 필요시 해당 지역 현장 체험학습 지원단을 임시 위원으로 위촉 가능
- 유의 사항
  - 학교장 및 계약담당자(행정실장 등)는 위원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보안각서 징구

2) 활성화위원회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본 계획, 전년도 평가자료, 사전답사(예정) 자료 등을 바탕으로 운영 방법, 시기, 장소, 교육활동 프로그램, 예상 경비, 업체 선정 조건 등을 협의하고, 계약 관련 입찰 진행 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한다.

3) 활성화위원회에서 협의한 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 사전답사

- 1) 사전답사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목적 달성 여부 및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 사전답사 주요 내용 -

- 실시 경로 및 예정지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목적과의 부합 여부
-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 가능 여부, 안전 및 위생 상태 전반
- 청소년 유해환경과의 인접 여부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 경로 상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 2) 사전답사는 학부모 및 실제 행사 전체 일정에 참여하는 인솔자 중심으로 실시해야 하며, 학교 규모에 따라 답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답사인원: 4인 이내
- 사전답사 참가자: 실제 현장체험학습 전체 일정에 참여하는 인솔자, 활성화 위원회 학부모 위원 등  
※ 학부모가 미참가 하는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

-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은 사전답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시기, 방법, 대상은 당해 계약 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다만, 무리한 일정으로 사전답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 **국외 수학여행**은 사전 답사를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다만, 직접 답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위탁업체 등의 사전답사 서류로 대체 가능
- **수련활동**은 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국공립 수련시설 이용 시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 가능

- 4)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사전답사는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할 수 있으나, 고위험 활동(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화학 물질 사용·위험기구 사용 활동 등)은 생략할 수 없다.

- 5) 사전답사 중 또는 사전답사 실시 전후에 관련 업체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금품·향응·기타 편의(교통수단, 숙박 등)를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1) 학교운영위원회는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3호, 제5호 등

### - 주요 심의 사항 -

- 현장체험학습 시기와 장소
- 현장체험학습 운영 형태 결정
- 학부모·학생·교사의 희망, 전년도 평가결과, 사전답사자료, 교육활동 프로그램, 경비 등
- 안전대책 마련 및 점검, 계약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미참가 학생 지도 계획

2)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계획을 결재한다.

### -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서 포함 내용(예시, 계획수립 시 참고) -

- 목적 및 방침
- 수학여행 개요: 테마명, 기간, 장소, 숙소, 대상, 인솔자 배치, 교통편, 식사(식단)
- 여행경비(1인당 경비산출내역 첨부), 환불규정,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등
- 현장체험학습 추진 일정(단계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업무담당자)
- 일정별 교육활동 내용
  - 기상악화, 천재지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체 프로그램 포함
  - 미참가 학생 지도 계획(명단, 대체 프로그램, 장소, 지도교사)
- 요양보호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특별 보호학생의 관리 및 안전지도 대책
- 저소득층 지원 계획
- 인솔교사, 보조인력(내외부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 등 인솔자 현황 및 업무분장
  - 야간 생활지도를 위한 근무조 편성
  - 업무배치표 등
- 숙소별 안전사항 및 객실 배정(학생 배정 현황), 배치도
- 교통수단별 이용 계획 차량별 탑승 현황
- 비상연락망
- 인솔자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련 연수 계획
- 생활안전 지도 계획(야간 생활지도 계획 포함)
- 상황별 안전교육 계획(주요 내용 포함)
- 시안 발생 대비 비상 보고 체계 및 즉시 후송 대책(인근 의료기관 파악) 등
- 비상시 업무분장 및 대응 체계
- 교과 연계 학생활동 체험학습 자료 및 학생 사전·사후 활동 계획
- 현장체험학습 관계자 청렴 교육 계획

## 나 계약하기

### 계약 업무 흐름도<sup>※</sup>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최신 법령 및 재무과 계약 관련 지침을 확인하여 추진

|    |                    |   |
|----|--------------------|---|
| 1  | 사업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수립,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작성</li> </ul>   |
| 2  | 예산집행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부서 품의 요구, 기초금액(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견적가격) 작성</li> </ul>   |
| 3  | 계약방법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 견적 제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li> <li>2인 이상 견적 제출 : 추정가격 1억원 이하</li> <li>입찰 : 금액 상관없이 가능(추정가격 1억원 초과시 반드시 입찰)</li> </ul>  |
| 4  | 사전규격 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 5천만원 이상 : 5일</li> <li>간급 : 3일</li> </ul>  |
| 5  | 공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서 작성(수의계약 안내 공고, 입찰공고 등)</li> <li>입찰 공고 : 7일~10일(단, 2단계 입찰: 10일 이상)</li> <li>간급공고 또는 재공고 : 5일(단, 2단계 입찰 10일 이상)</li> <li>수의계약 안내 공고 : 3일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li> </ul>     |
| 6  | 개찰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낙찰하한율 90%</li> <li>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낙찰하한율 88%</li> <li>일반(제한) 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li> <li>2단계 입찰 : 제안서 적격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li> </ul> |
| 7  | 계약 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보증금(10%), 인지세(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li> <li>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li> </ul>  |
| 8  | 착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착수신고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 등</li> </ul>   |
| 9  | 선금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권 확보[선금 보증서]</li> </ul>   |
|    | (해당시)<br>과업내용 변경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물가 변동, 그 밖의 계약변경</li> <li>계약금액 증액 시 계약보증금, 인지세 등 추가 납부</li> </ul>   |
| 10 | 용역 완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수서류 확인(완료계), 정산서(필요시)</li> </ul>  |
| 11 | 용역 완수 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료검사원, 검사(완료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li> </ul>  |
| 12 | 대가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구서 접수 후 5일 이내(초일불산입,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li> <li>국세, 지방세 납세증명[G2B 확인 가능], 수의계약 시 생략 가능</li> <li>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li> </ul>                           |

## 계약 방법

| 계약 방법       |                          | 내 용   | 금액 기준                              |   |
|-------------|--------------------------|---|------------------------------------|---|
| 수의 계약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기 견적서에 의해 계약 가능</li> </ul>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용역 계약              |   |
|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에 의한 견적서 제출 공고 후 계약상대자 결정</li> </ul>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용역 계약                  |   |
| 입찰          | 일반(제한) 입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li> <li>※ 지역, 중소기업, 재무상태, 실적 등으로 제한할 경우 제한 입찰</li> </ul>                              | ※ 금액 상관없이 가능 (추정가격 1억원 초과시 반드시 입찰) |   |
|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격·기술 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 실시</li> <li>* 규격 적합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때 가격 개찰 실시</li> </ul>     |
|             |                          | 규격가격 동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격·기술 입찰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가격입찰 실시</li> <li>* 규격 적합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가격 개찰 실시</li> </ul> |
|             | 협상에 의한 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 체결</li> </ul> |                                    |   |
| 조달청 카탈로그 계약 | 2,000만원 미만               | 1인  | 수요기관 예산 기준                         |   |
|             | 2,000만원 이상<br>5,000만원 미만 | 2인 이상   | 상동                                 |   |
|             | 5,000만원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인 이상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서 송부 후 평가하여 업체 선정</li> <li>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음</li> </ul>         | 상동                                 |   |

## 계약시 유의사항

- 1) 계약의 원칙은 일반입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2) 특정업체와의 계약(수의계약)을 위한 편법적 분할계약은 금지한다.  
-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1절
- 3)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수의계약은 지역·실적 등 중복제한이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 4) ‘일반(제한)입찰’ 방식은 중복제한이 불가하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예) 실적제한+지역제한 불가
- 5) 추정가격은 인솔자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 수련활동 계약 시 유의사항 -

- 수련활동 계약은 운송업체·수련업체로 계약  
※ 무허가 중간알선업자, 이벤트회사 등과 계약은 금지
- 학생들이 실제로 숙박하는 장소의 수련업체와 계약  
- 콘도에서 숙박하면서 유스호스텔과 계약하는 것은 금지
- 학교의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패키지 형태)는 반드시 프로그램 인증 여부 확인
- 수련활동 위탁 시 재위탁 여부 및 프로그램 인증 여부 확인  
※ 인증번호, 프로그램명, 기관명, 대표자명, 유효기간

## 계약 시 필수 반영 사항 [여행, 숙박, 식당업체 공통사항]

- 1)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 2)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과 책임의 소재, 책임의 범위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한다.
  - ※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탁 계약자가 책임진다는 내용 기재
  - 여행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국내·외 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및 업체의 영업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3)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방안을 이행한다.
  - ※ 미래교육과-253(2023.3.7.)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 공문 참고

### - 여행자 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주요 내용 -

#### ■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 활동: 1일형 현장체험학습 중 고위험 활동 및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 대상: 학생, 인솔교사, 보조인력(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 등 모두 포함
- ※ 의무가입 외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입 여부 결정
- ※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등 구체적인 보상 범위 확인  
(국외 수학여행의 경우, 실비 전액 보상 조건 가입 권장 및 구조송환비용특약 내용 확인)
- ※ 고위험군 활동: 수상활동, 항공활동, 장거리걷기활동(10km이상), 유해성물질사용·하강레포츠·ATV탑승 등을 활용하는 활동(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별표7) 등
- ※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일부 활동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참고

#### ■ 영업배상보험 가입 확인

| 구분   | 보험종류  |
|------|---|
| 차량   | 자동차종합보험   |
| 수련시설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대),<br>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 숙식시설 |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 구체적인 계약 방법별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계약실무 32쪽] 참고

**현장체험학습 사전 준비 (안전교육 포함)**

- 1)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교육자료·현장 정보 등을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 홍보를 통해 가정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시설 및 차량 이용 방법,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활동 등을 설명하고,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교통수단별 안전교육(버스, 선박, 항공기, 기차, 대중교통 등)
- 공중시설 이용 예절 교육 및 기타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교육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해 물품을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교육
- 숙소 등 체험시설에서의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대피로 확인 등) 교육

- 3) 신체 허약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하고, 활동 참가 시 수련시설 및 위탁여행업체에 명단과 대상 학생의 건강 상태, 장애 특성 등을 통보하여 유기적인 안전지도 대책을 수립한다. 단,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한다.
- 4)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 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연수를 실시하고, 정보 재난 안전정보 포털 앱(안전디딤돌)을 인솔자·학생이 다운받아 설치 및 활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 5) 미참가 학생의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철저한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미참가 학생 지도 계획 내용 -**

- 미참가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및 학습 지도 운영  
※ 필요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수립
- 미참가 학생 지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유도, 결석 처리 등으로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경제적 사정으로 불참하는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6) 단체차량 이용 시 운행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 등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

**- 단체차량 점검 -**

- 운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확인 및 종합의견란에 이상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 추가 확인
- 계약서(통보서)의 차량번호와 실제 배차된 차량번호 일치 여부 확인
- 계약서(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확인(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도 확인 가능)

7) 갯벌체험, 산행, 캠핑(야영), 전시·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활동 계획 시 사전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미리 점검한다.

**- 해양 수상 활동 안전 사항 -**

- 해양경찰서장, 시·군·구에 등록 업체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적정 배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 학생 교육 시 활용할 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등의 등록여부 확인
- 인증 프로그램 수련활동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8) 학생 수송버스 운전자 음주 감지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 음주 감지 등 교통안전 대책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차고지에서 음주 감지 실시,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음주로 확인 시 운전자 교체 및 학교에 결과 통보
- 당일 출발시 학교에서 음주감지 실시, 이를 대신하여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
- 숙박지에서는 음주감지 실시(음주감지기 활용 권장)
- 음주 감지 거부 및 운전자 음주 의심 시 112 신고

**※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 ⑫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8. 14.>

9) 식중독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 선정
  - 필요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안전 및 급식위생 담당 부서)에 일정을 통보하고 위생·안전 점검 결과조회 공문 요청
  - 지자체 위생점검이 어려운 경우,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한 현장 지도
-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 위생 안전이 검증된 업체 이용
- 동일 원인(음식)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유사 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할 경우 치료조치하고, 인솔책임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교육 실시

1) 교육프로그램 담당교사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한다.

- 학교 자체계획 또는 수련기관 및 위탁업체와 협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권장

2) 현장체험학습 출발 당일을 비롯하여 전 기간 동안 학생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이동 장소마다 참여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

3)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품을 준비하여 소지한다.

4) 현장체험학습 당일 업체에서 제공한 안전인력, 전세버스 등이 계약서 내용과의 동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5) 현장체험학습 당일 출발 전 학생들에게 이동 시각, 경유지, 목적지 등을 안내하고, 인솔자 휴대전화 등의 비상 연락 체계를 안내한다.

6) 인솔자는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 및 학생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단체차량 이용 시, 출발 전 안전띠 착용 및 휴게소 안전교육 실시
- 대중교통 이용시, 사전 안전교육(귀가 지도 포함) 및 교통 예절 교육 실시

### - 학생대상 안전교육 실시 -

- 단체차량 이용 시 운전자는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 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선박·항공 이용 시 선원·승무원은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탈출 방법 등 교육을 학생 대상으로 실시
- 업체에서의 안전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솔자는 이행을 요구

7) 단체차량 이용 시 인솔자는 운전자에게 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 운행, 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8) 위탁교육 및 위탁운영 시에는 인솔자가 반드시 입장하여 교육활동에 참석해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 교육 내용, 안전 문제, 학생 호응도 등을 관찰하고,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9) 인솔교사 및 안전요원(내부)은 야간 생활지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유사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10) 식사 시간 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지도를 한다.

- 식사 전 식당 위생상태 및 음식의 신선도 확인
- 계획된 식단과 일치여부 확인
- 식사 전 손씻기 등의 개인 위생, 식사 예절 및 질서 지도 실시

경비 집행 방법

- 1)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 2) 현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 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한다.  
※ 품의 결재 후,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는 임시출납원 임명 불필요
- 3) 선금은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재무과 계약업무 편람, 용역계약 참고)

- 위탁업체와 계약 시 세금계산서 징구방법 -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참고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와 위탁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징구하고, 나머지는 위탁업체와 실제 사용업체와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를 확인
- 구분 없이 계약한 경우
  -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징구

## 인솔자(교직원) 관련 경비 등

- 1) 여비의 지급 방법, 대상 및 절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정한다.
- 2) 일비 외에 모든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업체에 일괄 송금한다.
- 3) 인솔 교사, 내부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 중 교직원은
  -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및 필요경비(입장료 등)는 학교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 활동 실시 전에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야간 생활지도 근무조를 편성하도록 하고, 그 초과근무 시간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총무과-11147(2017.7.26.) 공무원 출장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안내 참고

※ 국외 출장은 초과근무수당 지급할 수 없음[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및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592(2017.4.11.) 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련 안내 참고



교육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련 안내

### 1. 관련

가.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과-191(2008.2.15.) [국외수학여행중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관련 질의 회신]

나.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1809(2013.9.23.) [국외출장중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관련 회신]

2. 위 관련 가호로 국외출장시 제한된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하였으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는 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위 관련 나호에서는 국외출장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향후에는 현 지침에 따라 국외출장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대학 및 교육대학에서는 부설학교에 공문 전달 요망

## 정산방법

- 1)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책임하에 정산한다.  
(서식 84쪽)
- 2) 수익자부담경비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공개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 참고
- 3) 천재지변 등 국가 재난 상황 또는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제·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 처리에 대해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과 협의한다.

## 마 평가 및 사후 처리

### 현장체험학습 평가 및 결과 활용

- 1)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참여 학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2) 학교에서는 만족도 및 자체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운영 계획, 업체 및 장소 선정, 프로그램 질 개선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 3) 현장체험학습 실시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기록하며, 학생이 체험하고 느낀 소감 또는 보고서를 누적 기록하여 진로 탐색 등에 활용한다.

### 현장체험학습 평가 결과 공개

-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평가 결과는 실시 14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에 탑재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단,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평가 결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공개 항목에 활동 구분, 시기, 대상 학년, 목적지, 참가 인원, 1인당 경비, 학부모 동의율, 계약 현황(운송업체, 숙박업소), 만족도 등을 포함한다.

### 3 유형별 활동 추진 시 주안점

목적, 시기, 장소, 방법, 규모, 대상 학년, 예상 경비, 사전답사 등에 대해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한다.

#### 가 수학여행

- 1) 수학여행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계획적인 소규모 · 테마형 여행이 원칙
- 2) 학생 및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수학여행(국외여행, 동 학년 국내·외 분리 여행, 과다경비 부담 등)은 지양
- 3) 수학여행의 목적,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학생 및 교원의 요구 등을 반영한 주제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테마형 교육여행으로 운영

#### 나 수련활동

- 1) 수련활동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협동심 함양을 위한 단체 활동으로서 관련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 실시
- 2)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와 희망 등을 고려하여 활동의 교육적 목적, 프로그램 내용, 수련시설의 안전성 필수로 확인
- 3)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 등급을 받고, 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

\*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등급 : 적정·보완·미흡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http://www.youth.go.kr)) 누리집에서 수련시설 종합 결과, 수련활동 인증·신고 여부 확인 가능

-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거 허가된 수련시설 및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 국·공립시설에서 실시

\* 청소년수련관(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텔

- 위탁 운영 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위탁 시 운영의 주체와 책임 소재 명시

※ (인증대상) 청소년(만9세~24세)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1년 이내) 확인

- 4) 학생의 안전을 위해 인솔교사 및 수련시설 소속 안전 전문인력, 청소년 지도사는 반드시 현장 입장지도 실시
- 5) 청소년활동 운영 기관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명단과 신체 허약 정도 등을 통보하여 안전지도 대책 수립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18.>

###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부상자·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防壁)·울타리·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 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

- 1)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현장체험학습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반드시 안전교육 실시
- 2) 인솔자가 상시 입장지도하고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음
- 3) 사전답사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안전대책 등이 확보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생략이 가능하지만 고위험군 활동은 반드시 1회 이상 사전답사 실시

### - 고위험 활동 예시 -

- 수상활동, 항공활동, 장거리걷기활동(10km이상), 유해성물질사용·하강레포츠·ATV탑승 등을 활용하는 활동(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 익스트림 스포츠활동, 운전(동력이용) 활동, 병영체험, 동계 스포츠활동, 놀이기구 체험 등

- 4) 안전요원은 50명당 1명 배치 권장(인솔교사가 안전요원 자격 취득 후 인솔 권장)
- 5) 각 부서(기관)에서 추진하는 체험활동(생존수영, 안전체험활동 등)은 부서에서 안내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체험 활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라 국외 수학여행

- 1) 국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교육과정상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해당 학년 전체 학부모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 실시
- 2) 학생 및 학교간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는 체험학습(동학년 국내·외 분리 운영, 고액경비 등)은 지양하고, 반드시 경제적 부담에 따른 저소득층학생 지원 대책과 특수교육대상학생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참여 방안을 마련 후 추진

### - 국외 현장체험학습 관련 준수 사항 -

- 현지의 특성과 체험학습의 상황에 맞는 안전대책을 반드시 수립한다.
- 방문국 현지 대사관, 영사관, 여행사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http://www.0404.go.kr)), 해외 감염병 정보 확인([www.해외감염병now.kr](http://www.해외감염병now.kr)),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https://qcode.kdca.go.kr/>) 등 관련 사이트 참고
- 해외 현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은 참가를 자제한다.
- 항공기 또는 선박 이용 시 탑승 수속 및 절차를 안내하고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을 한다.

3) 인솔교원은 사전답사 및 수학여행 실시 전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전) 공무국외출장계획서, 기타서류(현장체험학습 계획서)
- (사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 교원인사업무처리요령 '공무국외출장' 참고

※ 사립학교의 허가권자는 자체 기준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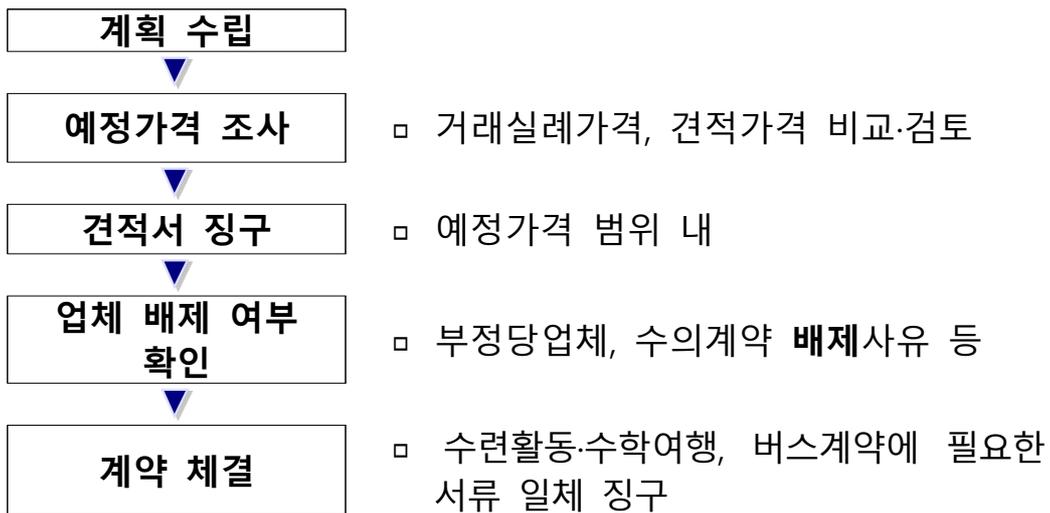
## 1 계약 방법별 진행 절차

## 수의계약

□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1) 수학여행은 위탁 업체 선정 시 위탁 총액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인솔자 경비 포함) 1인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가능
-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참조)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3) 수련활동은 운송용역, 수련활동용역 각각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가능

## 【수기견적 수의계약 업무 흐름도】



※ 2인 이상 전자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G2B, S2B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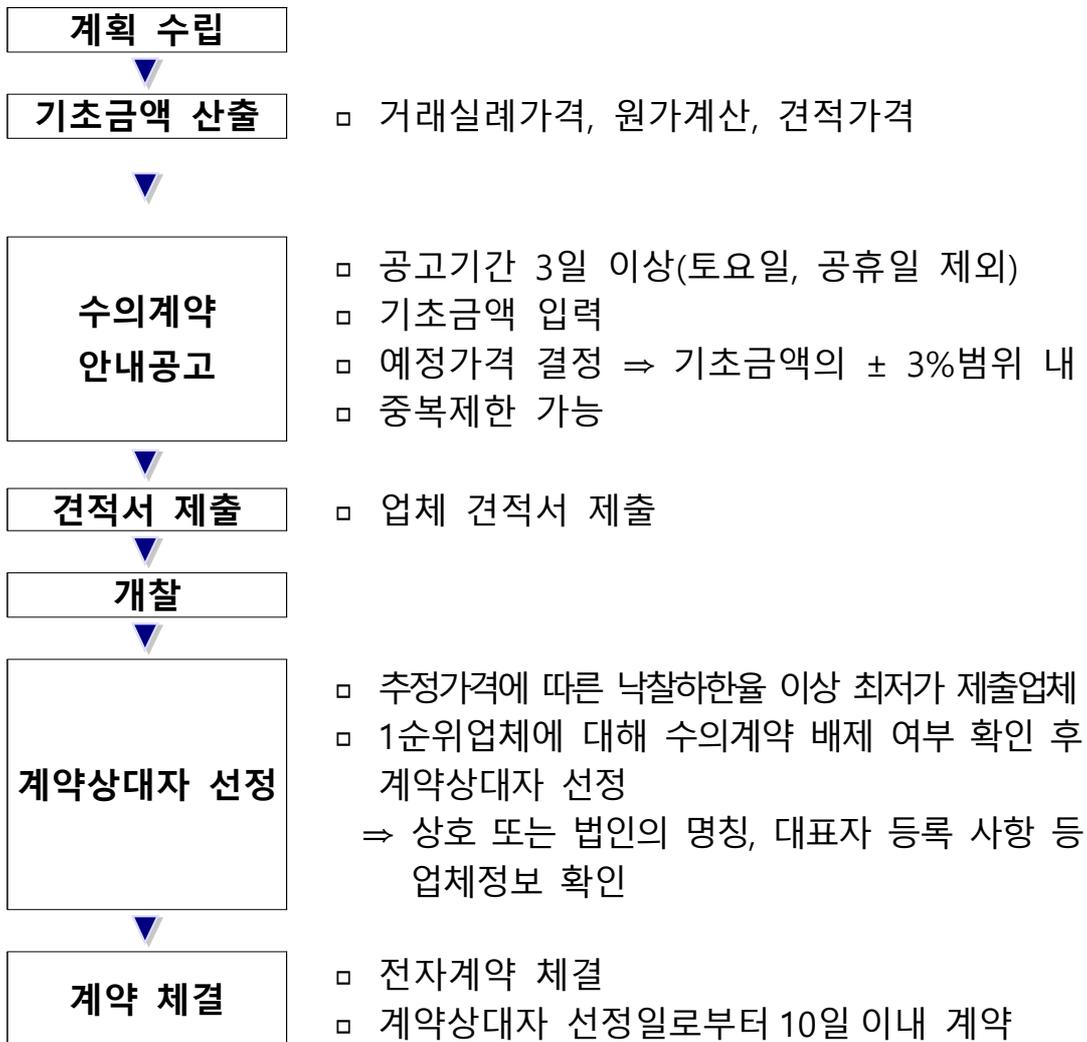
##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G2B, S2B 이용 전자견적)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는(전자견적 소액수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단,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2)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배제사유로 제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 【전자견적(G2B, S2B) 계약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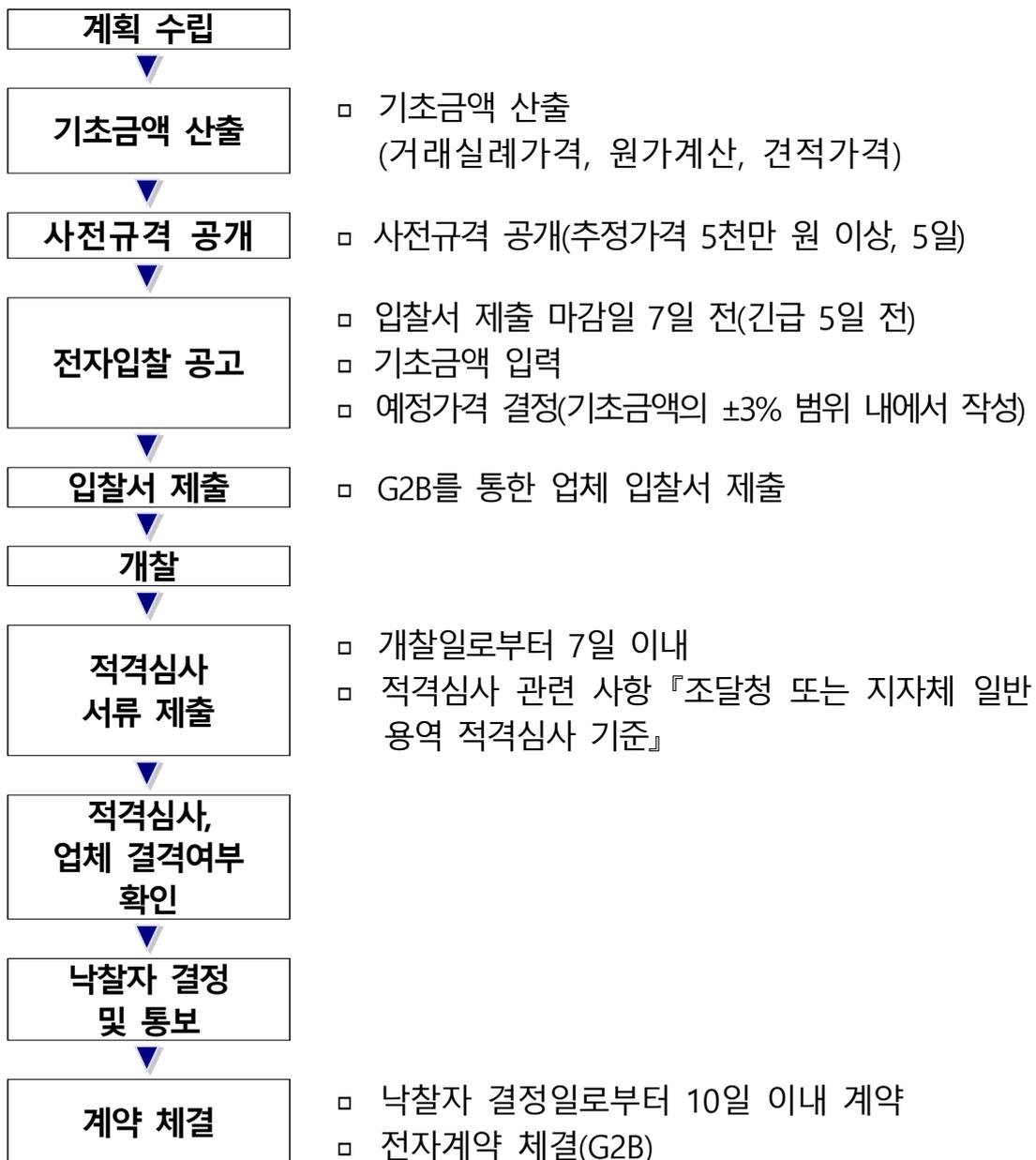
-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90%
-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 입찰

### □ 일반(제한)입찰

- 1)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 결정
- 2) 과도한 지역제한으로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위한 편법적 운영을 하지 않도록 유의

#### 【일반(제한)입찰 계약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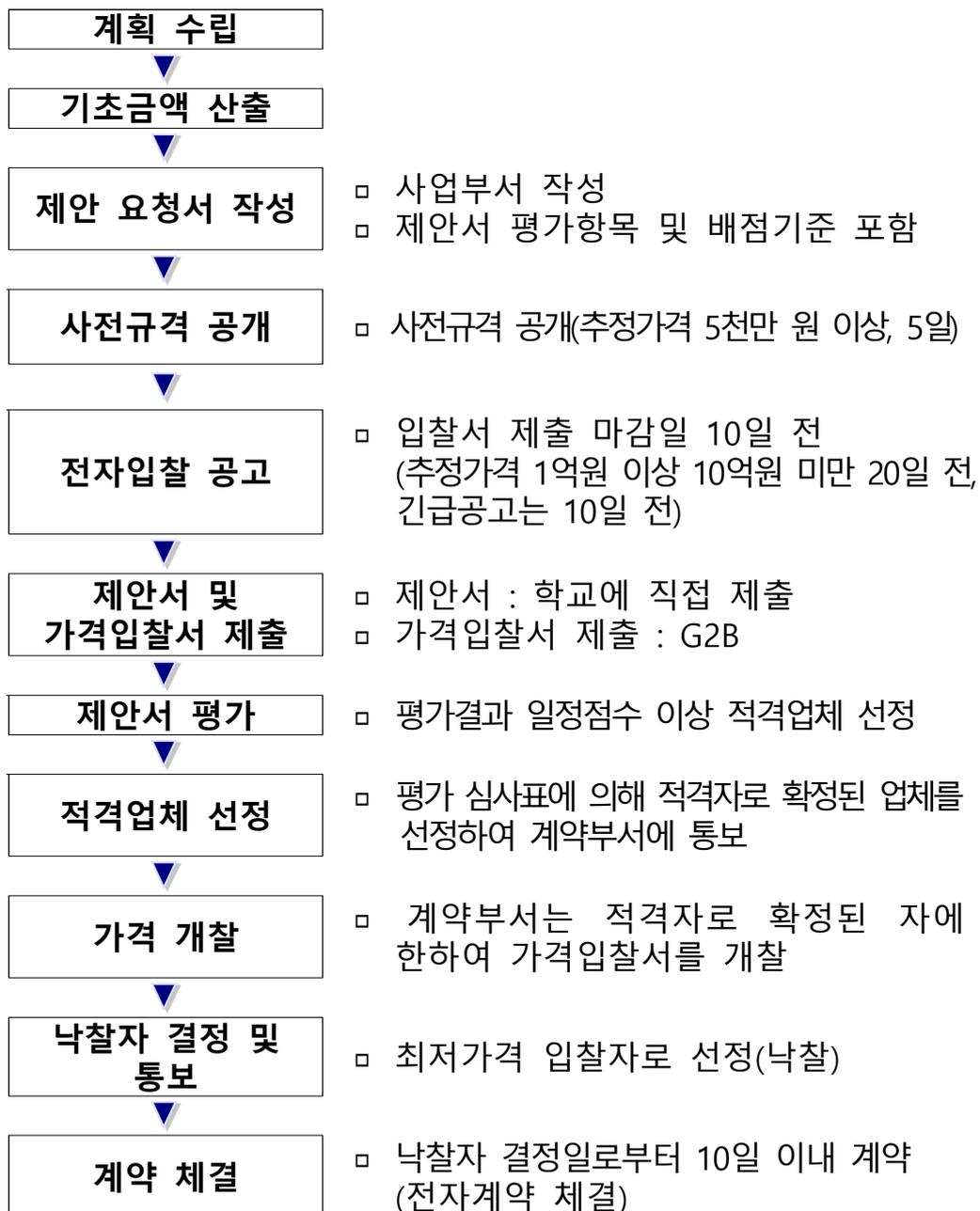


##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기술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한 후에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을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계약업무 흐름도】



## 1)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공고

-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긴급인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2단계 입찰은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 원칙
  - ※ 필요한 경우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규격·가격 동시 입찰)할 수 있음.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 공고문 등록 시(규격·가격 동시 입찰) 유의사항
  - 계약 방법을 '제한경쟁(총액)-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로 입력
  - 가격입찰서 제출 방법을 '전자입찰'로 선택
  - 낙찰자 선정 방법: 행정안전부 기준 → 제안서 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 투찰자

##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는 학교를 방문하여 접수(G2B 상으로 전자접수도 가능)
-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G2B 상으로 제출

## 3) 제안서 평가

- 평가표 작성 (서식 14 참고)
- 제안서와 제안서 설명을 토대로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 제안서 평가 시 유의사항 】

-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사전 발표 순서 등(예시: 접수 순, 추첨 등)을 미리 공지하여 공정성 확보
- 정량적 평가 분야는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여 평가(주관적 평가 금지)
- 상위 2개 업체 적격처리는 부적정함(공고서에 명시한 일정 점수이상 업체에 대해 적격처리)

## 4)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가격 개찰 실시)
- 부적격업체(일정점수 미만인 자)는 G2B 가격개찰 시 제외하고 개찰
  - ※ 일정점수에 대한 기준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며,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함

## 2 계약 시 구비서류

※ 불필요한 계약서류 과다 징구로 인한 업체 민원 제기 및 담당자 업무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G2B, S2B 등록된 서류 활용 권장

- G2B, S2B에 등록된 서류는 제출 요구하지 않음(G2B, S2B에서 출력하여 첨부).

### □ 일괄(숙소, 운송 등)위탁한 경우

- 여행 계약서(표준계약서 사용)
- 견적서(비용 내역서) - 경비는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교육활동비,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
- 식단표, 객실 배치도, 수학여행 일정표(프로그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 운송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전세버스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를 운송업체에 요구하여 확인
  - ※ 제출받은 서류는 교통안전공단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https://www.kotsa.or.kr/safeinfo>)에 반드시 진위여부 확인
  - ※ 전세버스 입찰 및 계약시 정보제공 등 안전강화 방안(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3158(2015.8.6.) 준수
  -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음
- 차량보험증권 확인
- 보조인력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 보조인력 배치계획 및 자격 증빙서류(해당 자격증 + 안전연수 이수증) 제출, 신분증은 현장 확인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또는 현장체험학습 실시 4주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점검 요청)
- 프로그램 인증 확인서(외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 인증수련활동 간편 확인: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http://www.youth.go.kr))

## □ 숙박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여행 계약서(소정 양식)
- 견적서(산출내역서)
- 식단표, 객실 배치도, 교육 일정표(프로그램), 숙박업체 현황표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 □ 운송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계약서(표준계약서 사용)
- 견적서
- 운송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전세버스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를 운송업체에 요구하여 확인
    - ※ 제출받은 서류는 교통안전공단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https://www.kotsa.or.kr/safeinfo>)에 반드시 진위여부 확인
    - ※ 전세버스 입찰 및 계약시 정보제공 등 안전강화 방안(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3158(2015.8.6) 준수
    -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음
  - 차량보험증권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 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1천만원 이상시)

## □ 수련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 수련시설 이용 계약서(소정 양식)
  - 교육청 및 지자체 직영 수련시설의 경우 '사용신청서'로 계약서 대체
- 견적서(비용 내역서) - 식비, 교육활동비, 시설이용료 등 세부내역 명시
- 식단표, 객실 배치도(방 배정), 교육 일정표 (프로그램)
- 수련시설 현황표 (강당, 체육관, 모험시설, 수영장, 식당의 규모 등)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및 인증서(인증 프로그램) 사본
-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교육청 관련은 제외)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 □ 공통 계약 서류

- 계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나라장터 출력 가능)
    - 수의계약체결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청렴서약서
    -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 확인)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계약 이행 보증보험 증권(각서), 사용인장계
    - 인지(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 징구)
    - 인감증명서(전자계약 체결 시 제출 생략)
  - 종료 후 :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수의계약시 생략 가능),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청구서
- ※ 기타 계약 서류는 지계법 및 시·도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징구

### 3 계약 시 유의사항

- 1) 소정의 계약서를 사용하되 기타사항에 상호 협의사항 명시 가능  
(예) 동일 행사기간에 타고생 수용여부 문제 등
- 2)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의 관련 대책 포함 여부 확인
- 3) 시설의 숙박정원: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준수
- 4)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 가입(종류, 보상 범위 등) 여부 확인
- 5) 과도한 차령 제한 지양(전세버스 차량 연식 기본 11년, 최대 13년)
- 6) 운전자 음주금지 실시 및 안전운전 명시(음주 확인 시 운전자 교체, 112신고조치 포함)
- 7)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
- 8) 노선버스는 전세버스로 투입 할 수 없음을 명시
- 9)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도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준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 ③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광역급행형 및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4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

### □ 계약 해지 관련 ※ 계약서(특수조건)에 여행자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명시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예견되는 경우
- 4)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법규에 정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 표준약관>

- ❖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020호(2019. 8. 30.개정)
  -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①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약관 【제13조 2항 2호의 가】에 의거 손해배상 없이 계약해지 가능).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0021호(2019. 8. 30.개정)
  -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약관 【제16조 2항 2호의 가】에 의거 손해배상 없이 계약해지 가능).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위약금 지급

- 1)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또는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음
-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업체에 위약금을 지급
- 3) 여행에 관한 위약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름

| <b>-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지급 분쟁 해결기준 -</b>                         |  |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12.20. 일부개정, 별표2) |  |               |
| 분쟁유형  | 해결 기준  |               |
| 국내 여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여행)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li> <li>•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중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 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li> </ul>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중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li> </ul>   | 위약금 50% 감경    |
| 국외 여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li> <li>•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중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li> </ul>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중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li> </ul>   | 위약금 50% 감경    |

## 1

## 관련 법규

## 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87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안전과), 063-239-38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현장답사“란 학교 밖 현장교육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 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 등 교육활동 참여자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학교구성원“이란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를 말한다.
5. “교육활동 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일체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7.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중 학교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11.10.>
- ② 교육감은 학생안전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급학교에 보급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급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학교구성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9.30.>
- ⑤ 학교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6.9.30.>[제목개정 2019.12.6.]

제4조(학생안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권 보장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안전 관리의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
2. 학생안전 관리를 위한 분야별, 사업별 추진계획
3. 학생 안전교육 및 홍보 계획
4. 학생안전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5. 안전관련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6. 학생안전 관리·감독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생안전권 보장 특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권 보장 특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자문 한다.

1. 학생안전 관리 정책 방향 제시
2. 학생안전 종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안전 관리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방안
4.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안전교육 전문 강사풀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1.10.>

1. 학생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의 안전관리 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학교시설물 및 학생안전 관련 담당 공무원
5.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학생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 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10조(현장체험학습)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
2. 학교구성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하여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의 실시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9.12.6.>

④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의무이행 위반이나 기타 문제를 발견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12.6.>

제11조(현장답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험·훈련·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신설 2016.9.30.>

#### 제12조의2(학교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 및 대처 방안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한다.

[본조 신설 2016.9.30.]

제13조(안전교육 교과목 개설) 교육감은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연수원의 각종 연수과정에 학교 및 학생 안전 등에 관한 교과목을 편성한다.<개정 2023.11.10.>

####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안전관련 기관에 교육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 과정에서 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00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063-239-34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현장체험 학습과 수련활동 등(이하 “현장교육“이라 한다)의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의 학생안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제2조(방침)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되,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계획수립)

-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현장교육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주제별·학급별 등 소규모 단위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
  2. 다수의 차량이 행렬을 지어 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독 또는 소수 차량 단위로 운행하도록 한다.
  3. 행락철 등 특정 시기나 일부 관광지·명승지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4. 교육장소 및 시설, 차량 이동,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한다.
- ④ 현장교육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에서는 교직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⑤ 수익자 부담의 현장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불참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별도의 교육 참가 대상이 적어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별도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사전답사)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장소 및 시설 등을 수차 이용하면서 참가 학생 및 교원들의 평가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계약)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에 필요한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의 사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의 법적인 하자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인솔자와 학생들에게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인솔자 등)

-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학생 수 및 차량 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 기간 중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비상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시에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 운행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 ① 학교의 장은 출발 전에 차량 내 안전장구의 비치여부 및 위험요소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인솔책임자는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생현장교육차량' 표지를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출발 전에 운전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수칙)** 인솔 및 지도교사는 현장교육에 임하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한다.
- 2. 인솔 및 지도교사나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 3. 교육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 4. 차량 운행시에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각종 돌발사고 발생시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 6.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제10조(사고처리)**

- ①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당해 학교의 장과 119구급대 및 인근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사고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없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안전사고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하며, 사후 보상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1조(사후평가)**

-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종료 후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② 평가회의 결과는 차기 현장교육계획 수립시에 개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4. 18.>



##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중략>

- 15) 시의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방송하게 해야 한다.
- 16)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 17)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 18)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이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중략>

- 20)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중략>

###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중략>

#### 3) 전세버스

- 가)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나)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다)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 라) 영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략>

##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나.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다.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라.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 4)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행위
  - 5)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 아.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략>

-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중략>

- 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대열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 파. 여객의 안전한 승차·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 하.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6.]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61호, 2024. 2. 16.,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안전과), 063-239-08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학교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30., 2023.11.10., 2024.2.16.>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립학교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을 말한다.
3.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착용하는 복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과 교복구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2. 균등한 교육여건 실현을 위한 교복구입비 지원

제5조(지원대상 및 횟수)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학교 급별로 한 차례만 지원한다.<개정 2015.5.29., 2016.6.17., 2018.11.16.>

1. 현장체험학습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
2.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편입학과 전학을 포함한다)하는 모든 학생

## 제6조(지원방법)

-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① 교육감 소속으로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6.17.>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책공보관, 교육혁신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6.6.17., 2019.12.6.>

1. 제2조제1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 교육복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속 재임은 4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6.17., 2023.11.10.>

부칙 <제5461호,2024.2.16>(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마. 기타 관련 규정

| 법령   | QR코드  |
|--|---|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4조                         |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창의적체험활동교육과정)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
|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     |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
|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3장 제13조             |     |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
|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교육부령)             |    |
|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 회계규칙(경기도교육청)      |    |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자동차관리법                         |   |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    |
|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    |

## 2

##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청렴 위반 사례 Q&A

### Q1.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무료입장(입장료, 체험비)

- ☞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 Q2. 학부모가 제공하는 학생 간식

-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 및 운전기사에 대한 간식 제공은 허용됩니다. 다만, 불법찬조금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Q3. 학교 교사가 수학여행 참석 교사에게 간식 제공

- ☞ 인사, 감사부서 직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아닌 동료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은 수수가 가능하므로 동료교사가 제공하는 간소한 간식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Q4. 현장체험학습 계약한 여행사, 숙박업소에 협찬 요구

- ☞ 학교 축제, 운동회 등 각종 행사에 계약한 업체(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3(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제한))

### Q5. 사전답사 시 여행사 제공 차량 이용 및 숙박업소 무료 이용

-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2항)
- ☞ 사전답사 시 여행사의 제공 차량이나 숙박업소의 숙소를 무료로 제공받는 편의 제공은 편의 제공으로 금품수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Q6.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시 직무관련자(여행사, 숙박업소)로부터의 음식물 또는 선물 수수**

-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
- ☞ 직무관련자인 여행사나 숙박업소로부터 수행 기간 중에 음식물 또는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로 보기 어려워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Q7. 현장체험학습 업체 선정 위원 참여 시 업체와 위원과의 이해 관계 존재**

-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교감 또는 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Q8. 여행사나 숙박업소에게 본인의 경조사 통보**

-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여행사, 숙박업소 등 계약업체)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됩니다. (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Q9. 자신의 학교 또는 다른(이전 근무) 학교에 여행사 알선 또는 계약 청탁 등**

-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제1항 제7호)

## **Q10. 여행사, 숙박업소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

-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체험학습 해당 직무 개시시점(계획)부터 종결시점까지 (종료)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사적인 접촉은 골프, 사행성 오락, 여행, 직무관련자(여행사, 숙박업소)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 참여이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접촉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 3

## 참고 사이트 및 연락처

| 주 제                                    | 비고   |
|--|--|
| <a href="#">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a>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 신고제  |
| <a href="#">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a>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등  |
| 제주도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br>064-710-3933  |
| 경주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 경주시 관광컨벤션과<br>054-779-6832   |
| <a href="#">전북특별자치도 체험학습</a>           | 전북 축제·관광정보·관광소식 안내   |
| <a href="#">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게시판</a>  | 현장체험학습 계획 및 결과 보고  |
| <a href="#">크레존(창의인성교육넷)</a>           | 전국 시·도 현장체험학습 모델 및 우수사례<br>안전요원 구인·구직  |
| <a href="#">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안전자료실</a>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학생 안전교육<br>자료 등  |
| <a href="#">학교안전지원시스템</a>              |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안전교육 자료실   |
| <a href="#">안전한 TV</a>                 | 행정안전부 안전한TV<br>유형별, 계절별, 생애주기별 재난안전 동영상  |
| <a href="#">국민재난안전포털</a>               |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비상대비 행동<br>요령  |
| <a href="#">대한인명구조협회</a>               |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및 인명구조교육   |
| <a href="#">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a>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 진위 확인 등  |
| <a href="#">기상청 날씨누리</a>               | 날씨, 지진, 황사 등의 기상 관측 및 기상처<br>체험학습  |
| <a href="#">식품안전나라</a>                 | 전문정보-업체검색-업체명 검색   |
| <a href="#">감염병 포털</a>                 | 감염병 정보, 소식, 지침 등 안내  |
| <a href="#">안전디딤돌(앱)</a>               | 정부대표 재난안전 포탈앱, 재난안전정보를<br>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br>재난안전정보 제공                      |
| 내손안-식품안전정보필수앱                          |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전국<br>식품 업체와 제품 정보 확인  |
| 안전해(海)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br>해양안전사고 예방 방재기관 대국민 구난활<br>동 지원 등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 체감형 안<br>전서비스 |

총 괄

김지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기 획

황명숙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집 필

정향미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편 집

김민정 | 군산풍문초등학교 교사

하정훈 | 전주아중초등학교 교사



---

발행일 2025년 3월

발행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1

---

[www.jbe.go.kr](http://www.jbe.go.kr)